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2월 5일 김한태 의원 등 23인

나. 회부일자 : 2010년 11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6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2010년 12월 20일) 상정 수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한태 의원)

□ 제안이유

-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를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의 뜻을 정함. (안 제2조)
-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함. (안 제3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가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4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내용 | 답변 내용 |
|------------------------------------|-------|
|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질의답변과 같음. | |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고 국민운동단체는 오히려 특혜로 볼 수 있는 지원을 받아 왔다고 생각함. 따라서 단체간에 불신과 반목 그리고 의원간의 입장차이 등이 있으므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국민운동단체의 지역봉사 역할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음. 논란의 핵심은 지원조례가 없어서 단체의 격이 떨어지고 예산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님. 이번 조례는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 재정되어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나 이번에 상정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들이 단체의 특성이 담겨 있지 않고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조례 제정의 의미를 알 수 없음.

나. 찬성토론

-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명분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있었음이라 생각함. 회원들의 사기양양 등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이므로 타 사회단체 등과 형평성에서 어긋난 국·공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함.

- 조례와 예산을 결부하는 것은 맞지 않음.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고 또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가결하는 맞음.
- 국민운동단체는 각각의 특성이 따로 있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통합하는 것은 단체운영 목적이나 기능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가결이 바람직함.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국민운동단체별 개별 조례는 국민운동단체 통합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67 |
| 의결 연월일 | 2010. 12. 20 |

제안년월일 : 2010년 12월 20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국·공유재산 무상대부는 동 단체와 관련한 상위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시 입법취지가 동 단체의 건물 등을 건립하고 운영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무상임대 받는 형식으로 운영하였던 것을 법으로 제정하였던 것이나,
- 부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이 아닌 단체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어 부천시지부가 국·공유재산의 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타 사회단체 등과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수정 주요골자

- 부천시지부가 국·공유재산의 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삭제함.(안 제4조)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를 삭제한다.

안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안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 조 례 안 | 수 정 안 |
|--|-----------------------------|
| <p><u>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u> 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과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와 계약으로 정한다.</p> | <p>“삭제”</p> |
| <p><u>제5조(준용)</u>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p><u>제4조</u> “조례안과 같음”</p> |
| <p><u>제6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u>제5조</u> “조례안과 같음”</p> |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를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총연맹조직”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 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자유총연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관련 단체와의 협력사업
4. 연구 및 홍보사업
5. 국제간의 유대강화 및 협력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각종사업과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